#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의신청 접수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22년 1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이의신청 대상 · 방법

- □ (이의신청 대상) '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① (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확인요청 부지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②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③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④ (보상금 환수) 「소상공인법」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⑤ (기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 휴대전화·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은 있으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가 시·군·구 방문 시, 지자체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 보조 지원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 【붙임1】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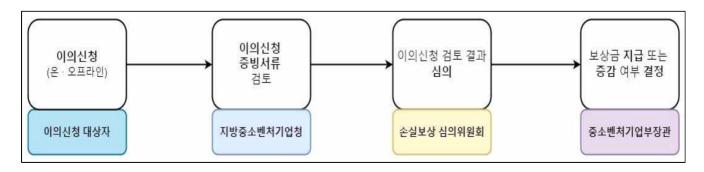
- □ (이의신청 방법)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또는 관할 시·군· 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붙임2】 첨부하여 신청
  -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붙임3】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제출

#### < 주의사항 >

- ◇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u>오프라인</u>으로만 이의신청 가능
  - ①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
  - ②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 2. 이의신청 절차 · 기간

□ (이의신청 절차) 온·오프라인 신청 →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



① (신청)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② (검토)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진행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③ (심의) 이의신청 검토 결과 심의(손실보상 심의위원회)
- ④ (결정)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 또는 증감 여부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이의신청 기간) '22.7.25(월)부터 접수
  -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 제외' 통지, ▲확인보상 지급 통지,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9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3. 유의사항

- □ 이의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붙임2)를 제출해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한 경우 이의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 붙임2에서 안내되지 않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상세내용'란\*에 신청 사유를 기재한 후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심사 진행 \* ▲(오프라인) 이의신청서의 '상세내용'란 ▲(온라인) 이의신청 접수 화면의 '상세내용'란
  - 신청 유형에 따른 필요 제출서류 이외의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음
  - 적격 증빙서류가 아니거나(예 : 모니터 화면을 직접 촬영한 사진 파일),
     품질이 불량하여 내용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 □ 이의신청을 청구한 이후에는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의 추가·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다만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 청구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기부의 서류 추가·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음
    - \* ▲사전에 제출서류가 안내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성실하게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필요 제출 서류의 일부분이 누락된 경우 등
  - 서류 추가·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90일)은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발송일, 도달일 포함)만큼 연장될 수 있음

- □ 제출된 **증빙서류**는 **손실보상금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반납하지 않음
-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
  - ▲신속보상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직전 단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신청을 이미 제기한 경우

### 4. 이의신청 문의

### □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

#### ■ 손실보상 처리절차

- 1.손실보상의 절차는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2.신속보상은 국세청 과세정보 및 지자체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증빙 제출없이 손실보상금을 산정·지급받는 절차입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IV.1.)
- 3.확인보상은 신청인이 신속보상 절차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손실보상금을 다시 산정·지급받는 절차입니다.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2.)
- 4.이의신청은 신청인이 확인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감액·미지급·환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손실보상금을 다시 산정·지급받는 절차입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니V.4)

5.신속보상 절차에서 산정된 보상금 지급에 동의 시 확인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사항을 이해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월

성 명 (서명 또는 인)

년

#### ■ 보상금 지급 동의

신속보상 절차에서 산정된 보상금 금 ( 자 필 로 기 재 )원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일

## 이의신청 청구 유형별 증빙서류

# 1 보상 대상 제외 (확인요청 부지급)

- ※ 귀하의「확인요청 결과통지」에 명시된 '보상금 부지급 사유<sup>\*</sup>' 각각에 해당하는 필요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 보상금 부지급 사유 : ①기업규모 부적합 ②방역조치 미이행 ③매출액 증가

# □ 기업규모 부적합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연매출 30억원 초과 중기업이거나, 기업규모
   판단이 불가능\*한 사업자
  - \*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평균매출액등(「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산정 기초자료 부족

< 참고 :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기업규모 요건 >

기업규모 요건	관련 법령			
(하나라도 미충족 시 소기업 미해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① 매출 규모가 소기업 기준 이하 또는 중기업의 경우 30억원 이하	제2조 제2항	제8조 제1항(별표3)		
타 기업과 지배구조상 관계없음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 및 제3조의2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비영리법인	제2조 제1항 제1~5호	제3조 제2~5항		
④ 영업활동 중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매출액 확인 가능)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1항 등 손실보상제도 근거 법령 해석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			

- (제출서류) ▲ <u>이의신청서\*(필수)</u>, ▲ <u>기업규모 증빙서류(필수</u>, 7~8p 참조)
  -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 대상 제외"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기업규모 초과" 또는 "기업규모 판단 불가" 적시

- [※ 기업규모 증빙서류: '기업규모 부적합 사유(미충족 요건)'에 따라 구분]
  - ① (매출 규모가 @소기업 기준과 ⓑ30억원을 모두 초과하는 기업) 매출규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매출규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

<개인사업자>			
<b>개업연월일</b> (사업자등록증 기준)		<b>증빙서류</b> (@, ⑥ 모두 제출)	
(18,10,10,116)	<u> </u>	上"이 <b>′19.1.1.부터 ′21.12.31.</b> 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sup>*</sup> 법령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 또는 "과세기간"이 <b>'19.1.1.부터 '21.12.31.까지인 부가가치세</b> <b>서</b>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및「소득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	
~'18.12.31	일반과세자	① "신고기간"이 '19.1.1.~'19.6.30.인 <u>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u> ② "신고기간"이 '19.7.1.~'19.12.31.인 <u>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u> ③ "신고기간"이 '20.1.1.~'20.6.30.인 <u>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u> ④ "신고기간"이 '20.7.1.~'20.12.31.인 <u>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u> ⑤ "신고기간"이 '21.1.1.~'21.6.30.인 <u>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u> ⑥ "신고기간"이 '21.7.1.~'21.12.31.인 <u>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u>	
	간이과세자	① "신고기간"이 '19.1.1.~'19.12.31.인 <u>부가가치세 신고서</u> ② "신고기간"이 '20.1.1.~'20.12.31.인 <u>부가가치세 신고서</u> ③ "신고기간"이 '21.1.1.~'21.12.31.인 <u>부가가치세 신고서</u>	
	면세사업자	① "과세기간"이 '19.1.1.~'19.12.31.인 <u>사업장 현황 신고서</u> ② "과세기간"이 '20.1.1.~'20.12.31.인 <u>사업장 현황 신고서</u> ③ "과세기간"이 '21.1.1.~'21.12.31.인 <u>사업장 현황 신고서</u>	
	② "과세기간"	'이 <b>'20.1.1.부터 '21.12.31.</b> 까지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_	" 또는 "과세기간"이 다음과 같이 <b>'20.1.1.부터</b> <b>까지</b> 인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	
'19.1.1~'19.12.31	일반과세자	① "신고기간"이 '20.1.1.~'20.6.30.인 <u>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u> ② "신고기간"이 '20.7.1.~'20.12.31.인 <u>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u> ③ "신고기간"이 '21.1.1.~'21.6.30.인 <u>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u> ④ "신고기간"이 '21.7.1.~'21.12.31.인 <u>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u>	
	간이과세자	① "신고기간"이 '20.1.1.~'20.12.31.인 <u>부가가치세 신고서</u> ② "신고기간"이 '21.1.1.~'21.12.31.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면세사업자	① "과세기간"이 '20.1.1.~'20.12.31.인 <u>사업장 현황 신고서</u> ② "과세기간"이 '21.1.1.~'21.12.31.인 <u>사업장 현황 신고서</u>	
′20.1.1~′20.12.31	@ "과세기간 <sup>•</sup>	"이 <b>'21.1.1.부터 '21.12.31.까지</b> 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⑥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다음과 같이 <b>'21.1.1.부터</b> <b>'21.12.31.까지</b> 인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_				<u>가기치세 확정신고서</u> 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간이과세자	① "신	<b>고기간</b> "0	′21.1.1 <b>.</b> ~	<b>′21.12.31.</b> 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면세사업자	① "과/	ᅨ기간"○	′21.1.1.~′	<b>21.12.31.</b> 인 <u>4</u>	<u>사업장 현황 신고서</u>
	② 세무사 <sup>또</sup> 서명날인	로 <b>공정·</b> 는 <b>공인</b> 할 것 <b>자</b> 의 개	<b>타당하다</b>   <b>회계사</b> 기	<b>고 인정되</b> 는 기 <b>장</b> 하였	<b>= 회계관행</b> 어 음을 <b>확인</b> 하고	∥ 따라 <b>작성</b> 되었을 것 및 해당 <b>기장자 본인</b> 이 <b>고려</b> 하여 <b>회계기간이</b>
'21.1.1~'22.3.3 <b>1</b>	개업연월	일			회계기간	
21.1.1** 22.3.31	′21.1.1.~′21	1.3.31.		'2	1.4.1 ~ ′22.3	3.31.
	′21.4.1.~′22	2.2.28.		개업연월	다음 달 초일	· 22.3.31.
	′22.3.1~22	.3.31		개인	<mark> </mark> 연월일 ~ '2	22.3.31
		지 않으므	로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당드립니다. 회계기간이 연 산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 "과세기간"	'이 <b>'21.1</b>	.1.부터 '	21.12.31.까	<b>지</b> 인 부가가기	티세과세표준증명

### <법인사업자>

법인설립연월일 (법인등기부 기준)	=	<mark>증빙서류</mark> (@, ⓑ 모두 제출)
~'18.12.31	"사업연도"가 <b>′19.1.1</b>	<b>.부터 '21.12.31.</b> 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10.12.51	(근거 법령 : 「법인서	∥법」시행규칙)
'19.1.1~'19.12.3 <b>1</b>	"사업연도"가 <b>′20.1.1</b>	<b>.부터 '21.12.31.</b> 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20.1.1~′20.12.31	"사업연도"가 <b>′21.1.1</b>	<b>.부터 '21.12.31.</b> 까지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21.1.1 ~′22.3.31	① 「주식회사 등의 회계기준에 따라 ② 세무사 또는 공인 서명날인할 것	모두 만족하는 손익계산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또는 「상법」에 근거한 기업 작성된 연결 손익계산서일 것 회계사가 기장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기장자 본인이 사성립연월일(법인등기부 기준)을 고려하여 회계기간이 회계기간
	′21.1.1.~′21.3.31.	′21.4.1 ~ ′22.3.31.
	′21.4.1.~′22.2.28.	개업연월 다음 달 초일 ~ '22.3.31.
	′22.3.1~22.3.31	개업연월일 ~ '22.3.31
	※ 되도록 월별 손익계산 단위로 끊어지지 않으므 기간이 정확한지 확인하	서를 취합한 자료로 제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회계기간이 연으로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하셔야 합니다.

- ② (중기업 이상인 타 기업과 지배·종속 관계) '주주명부' 제출
- ❸ (중소기업이 아닌 비영리법인) ▲'기업규모 판단 증빙서류(❶ 유형'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5호에 해당됨을 증빙하는 서류\*
  -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등) 신고확인증 또는 설립인가증
- ④ (영업활동 중이 아닌 경우) '기업규모 판단 증빙서류(❶ 유형'과 동일)

## ② 방역조치 미이행

- (대상)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 대상 제외"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방역조치 미이행" 적시
    - ※ 주의: '방역조치 미이행' 사유는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

### ③ 매출액 증가

- (대상) '19년 대비 '22년의 1~3월 일평균 매출액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필수), ▲인프라매출액 관련 증빙서류(해당자만)
  ▲ 부가세신고매출액 관련 증빙서류(해당자만)\*\*
  -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 대상 제외"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 "매출액 증가"를 적시한 다음 소명내용을 상세히 기술
  - \*\* 귀하의 '매출액 증가' 원인이 ①인프라매출액에 있는지, ②현금보정 과정에서 반영되는 부가세신고매출액에 있는지 또는 양쪽 모두에 있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증빙서류 모두 제출

## < ① 인프라매출액 관련 즁빙서류>

인프라매출액은 국세청 전자정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별도 서류로 정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 인프라매출액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아 특수산식이 적용된 경우(아래 ①, ❷참고)나 ▲ 불합리하게 왜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 : 수수료매장, 정부 지침에 따른 업종 변경 ☞ 17p 참고)에만 제출

### ❶ 월별 인프라매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 (대상) 해당 과세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특수산식을 적용하여 보상금이 최초 산정되었으나, 자신의 과세자료가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기본 산식을 통해 보상금을 재산정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 (증빙자료) 해당 월에 실질적 영업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다음 자료

구분	제출 자료 (가능한 자료 전부 제출)	해당기간
매입세액	·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 수기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인프라매출액이 30만원
사회보험료 지출 내역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	이하로 측정된 월 전체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만)	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예 : 2022년 1월 인프라매출액이 25만원일 경우 '22.1.1~'22.1.31)
공과금 지출내역	<ul> <li>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의</li> <li>▲ 전기요금, ▲ 수도요금, ▲ 가스요금</li> <li>납입 영수증 중 택 1*</li> </ul>	

- \* 납입영수증상 대표자명, 사업장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
- \*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인 경우에는 타당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 ② 월별 인프라매출액 값이 해당 연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의 2배 초과

- (대상) 특정 월의 인프라매출액이 과도하게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후 이를 확인하고 결제를 취소하였으므로, 문제가 된 결제내역은 제외하고 정상적인 인프라매출액만을 활용해 기본산식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 (증빙자료) ⓐ, ⓑ 모두 제출한 경우만 인정 (제출하신 후에도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과도하게 발생한 인프라 매출액을 증빙하는 자료	<u>홈택스에 등록된</u>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증빙
<b>b</b>	과도하게 발생한 인프라 매출액을 취소했음을 증빙하는 자료	<u>홈택스에 등록된</u>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취소 또는 정정 증빙

<sup>\*</sup> 홈택스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 ② 부가세신고매출액 관련 중빙서류(개업일 및 과세유형 등에 따라 구분) >

개업연월일	사업자 유형	과세유형	증빙서류
		일반과세자	'19~'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19~'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19.2.28 이전	기 간시 답시	면세사업자	'19~'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19.2.20 ♥ ℃		근에서 티시	수입금액증명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19~'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급한자답자	면세사업자	'19~'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간이과세자	′20~′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19.3.1~′20.2.29	게한자합자	면세사업자	'20~'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HOLLOTE	일반과세자	'20~'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	'20~'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20.3.1 이후	전체 유형	전체 유형	자료 제출 불필요 (지역·시설 평균 자료만 활용)

## 2 학인보상 부동의

- ※ 귀하의 확인보상금 산출 과정에 반영된 세부 항목\* 중 정정을 희망하는 부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 \* 확인보상금 산출 세부 항목 : ①매출액 (인프라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등) ②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③방역조치 이행일수 ④시설분류

### ① 인프라매출액 정정 희망

- (대상)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월별 인프라매출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제출서류) ▲ <u>이의신청서\*(필수)</u>, ▲ <u>인프라매출액 관련 증빙서류\*\*</u>(해당자만)
  -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 "매출액 정정"을 적시한 다음 소명내용을 상세히 기술 (특히 인프라매출액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기술)
  - \*\* 인프라매출액은 국세청 전자정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u>별도 서류로 정정하지 않는 것이</u> 원칙이며, <u>^ 인프라매출액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아 특수산식이 적용된 경우(아래 참고)나</u> <u>^ 불합리하게 왜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17p 참고)에만 제출</u>

## < 인프라매출액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아 특수산식이 적용된 경우 >

### ● 월별 인프라매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 (대상) 해당 과세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특수산식을 적용하여 보상금이 최초 산정되었으나, 자신의 과세자료가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기본 산식을 통해 보상금을 재산정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 (증빙자료) 해당 월에 실질적 영업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다음 자료

구분	제출 자료 (가능한 자료 전부 제출)	해당기간
매입세액	·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 수기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이고리메추애이 20마이
사회보험료 지출 내역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	인프라매출액이 30만원 이하로 측정된 월 전체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만)	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예 : 2022년 1월 인프라매출액이 25만원일 경우 '22.1.1~'22.1.31)
공과금 지출내역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의 ▲ 전기요금, ▲ 수도요금, ▲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sup>*</sup>	

- \* 납입영수증상 대표자명, 사업장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
- \*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인 경우에는 타당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 ② 월별 인프라매출액 값이 해당 연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의 2배 초과

- (대상) 특정 월의 인프라매출액이 과도하게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후 이를 확인하고 결제를 취소하였으므로, 문제가 된 결제내역은 제외하고 정상적인 인프라매출액만을 활용해 기본산식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 (증빙자료) ⓐ, ⓑ 모두 제출한 경우만 인정 (제출하신 후에도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과도하게 발생한 인프라 매출액을 증빙하는 자료	<u>홈택스에 등록된</u>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증빙
<b>b</b>	과도하게 발생한 인프라 매출액을 취소했음을 증빙하는 자료	<u>홈택스에 등록된</u>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취소 또는 정정 증빙

\* 홈택스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②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정정** (또는 면세수입금액 정정) **희망**

- (대상)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 수입금액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u>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 증빙서류 (필수)</u>
  -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 "매출액 정정"을 적시한 다음 소명내용을 상세히 기술

### <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 증빙서류(개업일 및 과세유형 등에 따라 구분) >

개업연월일	사업자 유형	과세유형	증빙서류
		일반과세자	'19~'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19~'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19.2.28 이전	기 근시 답시	면세사업자	'19~'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버이나아다	일반과세자	'19~'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	'19~'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간이과세자	'20~'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19.3.1~′20.2.29		면세사업자	'20~'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20~'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20.3.1 이후	전체 유형	전체 유형	자료 제출 불필요 (지역·시설 평균 자료만 활용)

## ③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희망 (A 타입)

(20년 이전 개업자 중 '기장신고자+기준경비율 대상자')

- (대상) 종합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되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sup>①</sup>경정된 종합소득세·법인세 관련
   신고자료 및 <sup>②</sup>'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 (필수)
  -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영업이익률 등 정정" 적시

## <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 신고·기장 유형 및 개업연월일에 따라 구분 >

신고	기장	개업연월일	서류 구분	증빙서류		
신고 유형	기장 유형			명칭 (@~ⓒ모두 제출)	대상 기간	
			①종소세 신고자료	<b>④표준재무제표</b>		
		404224	②필요경비	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9.1.1	
		~'18.12.31	구성 변경	<b>ⓒ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b>	~ ′19.12.31	
			증빙서류	<b>ⓒ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b> <b>지출내역</b>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		
			①종소세 신고자료	@표준재무제표		
		′19.1.1~	②필요경비	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1.1	
	복식 부기	′19.12.31	구성 변경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기층내영 (이벤회의중 토자내명	′20.12.31	
	누기		증빙서류	<b>지출내역</b>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		
			①종소세 신고자료	<b>④표준재무제표</b>		
		′20.1.1~	②필요경비	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1.1.1	
		′20.12.31	구성 변경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 ′21.12.31	
			증빙서류	지출내역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		
		′21.1.1~ ′22.3.31		해당사항 없음		
				<b>②간편장부소득급액계산서</b> ,		
기장			①종소세 신고자료	<ul><li>②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li><li>총수입금액 및</li><li>필요경비명세서</li></ul>		
기장 신고		~'18.12.31	②필요경비	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9.1.1 ~	
			구성 변경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19.12.31	
			증빙서류	지출내역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①종소세 신고자료	<ul><li>②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li><li>총수입금액 및</li><li>필요경비명세서</li></ul>		
		′19.1.1~			′20.1.1	
	간편 장부	′19.12.31	②필요경비	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20.12.31	
	<b>3</b> <del>−</del>		구성 변경 증빙서류	<b>지출내역</b>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ο ο ΄ ΄ Ιπ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		
			①종소세 신고자료	②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20.1.1~	- 51 0 7111	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1.1.1 ~	
		′20.12.31	②필요경비	<b>ⓒ인대차계약서 및 인차</b> 류	′21.12.31	
			구성 변경 증빙서류	<b>ⓒ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b> <b>지출내역</b>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		
			ο ονιπ	선자세금계산서 중 하나)		
		i				

		104.4.4			
		′21.1.1~ ′22.3.31		해당사항 없음	
			①종소세 신고자료	④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18.12.31	②필요경비	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9.1.1~
		~ 10.12.51	구성 변경 증빙서류	ⓒ <b>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b> 지출내역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	′19.12.31
			①종소세 신고자료	②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기준 경비율	기준 경비율 '19.12.31 '19.12.31 '20.1.1~ '20.12.31	②필요경비	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b>서</b>	′20.1.1 ~
추계 신고			구성 변경 증빙서류	ⓒ <b>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b> 지출내역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	′20.12.31
			①종소세 신고자료	<b>ⓐ추계소득금액계산서</b>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②필요경비	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b>서</b>	′21.1.1 ~
			구성 변경 증빙서류	ⓒ <b>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b> 지출내역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	′21.12.31
		′21.1.1~ ′22.3.31		해당사항 없음	
	단순 경비율			해당사항 없음	

# ※ 필독 : 증빙서류 유형별 추가 안내사항

증빙서류 유형		'대상 기간'의 의미	<b>주의사항</b> (필독)
종소세 신고자료	<ul><li>②표준재무제표</li><li>(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2호)</li></ul>		① 종합소득세를 최초 신고할 때 제출한 자료가 <u>아니라</u> , 해당 자료를 수정하여 종합 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자료를 의미
	<ul><li>②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li><li>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li><li>(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li></ul>	회계기간	② 세무사·공인회계사의 서명날인과 함께 "종소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목적으로 세무사·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다"는 내용의 문구가 세무사·회계사 자필로 씌어 있어야 함 (위 문구가 누락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		③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손금의 구성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로 제출하여 손실 보상금을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사기죄 (형법 제347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⑤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지급연월' (신고서 우측 상단에 위치)	-
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포함해야 하는 기간	※ 이의신청자가 제출한 계약서 명칭이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면, 계약 내용의 실질이 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서로 간주
	ⓒ <b>임차료 지출내역</b>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	이체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기간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임차내역을 확인 가능한 '이체확인증(또는 송금확인증)', '통장 사본(예금주계좌번호은행명이 포함된 1면 뿐 아니라 전 기간 이체 내역을 확인 가능한 사본 필요)', '전자세금계산서(임대인, 임차인 발행 모두 가능)' 여야 함 (수기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 < 법인사업자 제출서류 : 신고·기장 유형 및 개업연월일에 따라 구분 >

신고 유형	기장 유형	개업연월일	서류 유형	증빙서류			
유형	유형	/II & C & Z	γιπ πο	명칭 (@~ⓒ모두 제출)	대상 기간		
			①법인세 신고자료	<b>④표준재무제표</b>			
		404004	②필요경비	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9.1.1		
		~'18.12.31	구성 변경 증빙서류	ⓒ <b>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b> <b>지출내역</b>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	′19.12.31		
			①법인세 신고자료	<b>@표준재무제표</b>			
		′19.1.1~ ′19.12.31	②필요경비	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b>서</b>	'20.1.1		
기장 신고	<u>복</u> 식 부기		구성 변경 증빙서류	ⓒ <b>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b> <b>지출내역</b>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	'20.12.31		
			①법인세 신고자료	@표준재무제표			
		'20.1.1~ ②필요경비 '20.12.31 구성 변경 증빙서류	②필요경비	<b>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b>	′21.1.1		
			ⓒ <b>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b> <b>지출내역</b>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	'21.12.31			
		′21.1.1~ ′22.3.31	해당사항 없음				
추계 신고	법인사업자는 추계신고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 ※ 필독 : 증빙서류 유형별 추가 안내사항

ð	행서류 유형	'대상 기간'의 의미	<b>주의사항</b> (필독)
법인세 신고자료	<b>③표준재무제표</b> (법인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3)	회계기간	① 법인세를 최초 신고할 때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소득·손금의 액수 또는 구성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새로 작성한 자료를 의미 ② 세무사·공인회계사의 서명날인과 함께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목적으로 세무사·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다"는 내용의 문구가 세무사·회계사 자필로 씌어 있어야 함 (위 문구가 누락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③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손금의 구성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로 제출하여 손실 보상금을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사기죄(형법 제347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⑤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지급연월' (신고서 우측 상단에 위치)	-
필요경비 구성 변경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포함해야 하는 기간	※ 이의신청자가 제출한 계약서 명칭이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면, 계약 내용의 실질이 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서로 간주
	ⓒ 임차료 지출내역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	이체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기간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임차내역을 확인 가능한 '이체확인증(또는 송금확인증)', '통장 사본(예금주계좌번호은행명이 포함된 1면 뿐 아니라 전 기간 이체 내역을 확인 가능한 사본 필요)', '전자세금계산서(임대인, 임차인 발행 모두 가능)' 여야 함 (수기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 ④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희망 (B 타입)

('21년 이후 개업자 + (개업 시기 무관) 단순경비율 대상자)

- (대상) 보상금 산정 시 업종·시설 평균값이 적용된 영업이익률 또는 인건비・임차료 비중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 21년 이후 개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21.1.1.~'22.3.31. 사이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이 '21.1.1.~'22.3.31.인 법인사업자를 의미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sup>①</sup>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와 <sup>②</sup>인건비 증빙서류・<sup>③</sup>임차료 증빙서류\*\*(필수)
  -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영업이익률 등 정정" 적시
  - \*\* **^손익계산서**와 **^인건비 · 임차료** 증빙서류는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 < 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 및 서명날인한 손익계산서>

- ◇ (요건 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또는「상법」에 근거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될 것
- ◇ (요건 2) 세무사·공인회계사의 서명날인과 함께 "세법에 따른 적격증빙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세무사·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다"는 문구가 세무사·공인회계사 자필로 씌어 있어야 함 (위 문구가 누락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 (요건 3) 이의신청자의 개업시점을 고려하여 회계기간이 다음과 같을 것

이의신청자의 개업연월일	회계기간
~′18.12.31.	′19.1.1.~′19.12.31.
′19.1.1.~′19.12.31.	′20.1.1.~′20.12.31.
′20.1.1.~′20.12.31.	′21.1.1.~′21.12.31.
′21.1.1.~′22.3.31.	개업한 날부터 '22.3.31.까지

#### ☞ 이상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익계산서만 인정

## < ② 인건비 중빙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특세법 시행규칙)>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경우, 손익계산서 회계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
  - \* 동일한 기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오른쪽 상단의 '지급연월' 기준

이의신청자 개업연월일	손익계산서 회계기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간
~′18.12.31.	′19.1.1.~′19.12.31.	'19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총 12개월치)
′19.1.1.~′19.12.31.	′20.1.1.~′20.12.31.	'20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총 12개월치)
′20.1.1.~′20.12.31.	′21.1.1.~′21.12.31.	'21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총 12개월치)
′21.1.1.~′22.3.31.	개업한 날부터 '22.3.31.까지	개업한 달부터 '22년 3월까지

### < ③ 임차료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모두 제출) >

- ◇ 손익계산서 회계기간이 계약기간에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 \* 이의신청자가 제출한 계약서 명칭이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면, 계약 내용의 실질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로 간주
- ◇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지출내역 (다음 중 택일)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등 (명칭은 은행마다 다름)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 (예금주·계좌번호· 은행명이 포함된 1면 뿐 아니라 전 기간 이체 내역을 확인 가능한 사본 필요)'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이체내역을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 \* 임대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와 임차인이 발행한 전자세금 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모두 가능 (수기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 5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을 희망하는 사업자

- (대상)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붙임5」참고), ▲ 시설분류확인서(해당자만 필수, 시·군·구 발급)
  -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방역조치 이행 일수 정정" 적시
    - ※ (주의) '시설분류확인서'는 보상 대상 기간('22.1.1.~'22.3.31.) 중 사업장을 이전하여 관할 지자체가 변경된 사업자만 해당
      - ② ①변경 전 지자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②변경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⑤ 시설분류 정정을 희망하는 사업자

- (대상)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시설분류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시설분류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시설분류 정정" 적시

# 3 그 밖의 신청 유형

- ①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u>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필수</u>,
     시·군·구 발급, 「붙임6」참고)
    -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감액·미지급"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방역조치 위반 사실 정정" 적시
- ② (보상금 환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제출서류) ▲ <u>이의신청서\*(필수)</u>, ▲ <u>이의신청 소명자료\*\*(필수)</u>
    -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환수"로 체크
    - \*\* 소명자료 검토 이후, 필요시 자료 보완 또는 추가 제출 요청 가능

### ③ 담당자 착오

- (대상)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 **휴대전화·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은 있으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신청자가 **시·군·구 방문** 시, **지자체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 보조** 지원
- (요건 ①)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 (요건 ②)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 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 ※ (주의) 상기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가 아닌데도 보상금 동의 철회서를 허위 발급받아 손실보상금 수급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형법 제137조).사기죄(형법 제347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필수), ▲ 보상금 동의 철회 확인서(필수, 시·군·구 발급, 「붙임7」 참고) ▲ 보상금 부동의 관련 증빙서류\*\*(필수)
  - \* 이의신청 사유를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체크하고, 상세내용에는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지자체 담당자 착오로 잘못 동의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 및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 적시
  - \*\* "보상금 부동의 관련 증빙서류"는 10~17쪽을 참고하여 이의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

## 참고: 신청유형과 관계없이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 당사자 간의 계약방식 및 정부 지침 등 외부 변수로 인해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가 불합리하게 달라졌음을 당사자가 직접 소명·입증하여야 하는 경우들입니다.
- ◇ 각 이슈가 발생하는 양상에 따라 다양한 이의신청 유형이 존재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신청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에 소개되지 않은 이슈가 있다면 '이의신청서'에 자세한 상황을 기술하신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수수료매장

- (개념) 가맹본부·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계약방식\*으로 인해 보상금 산정 과정에 구조적 왜곡이 발생한 사업자
- \* 고객의 결제 대금을 가맹본부·대규모유통업자 명의(신용카드 POS기 등)의 매출액으로 올린 후 사후 정산 시 수수료를 제한 다음 사업자에게 할당된 매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가능한 이의신청 유형
- (보상대상 제외) 모든 유형
- (확인보상 부동의) ▲매출액 정정 ▲영업이익률, 임차료·인건비 비중 정정
- 추가 제출서류

증빙서류	참고사항					
	① '19.1월(또는 개업일)~'22.3월 손익계산서 ② 신고·기장 유형에 따른 분류					
		복식부기	표준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기장신고	간편장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1) 손익계산서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종소세 신고자료 중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참조)			
		단순경비율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손 익계산서 (별도 양식 제한 없음)			
	※ 단, 22.1~ 사 확인을	<ul><li>또 단, 22.1~22.3월분은 기장·신고유형에 상관없이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손익계산서로 제출 필요 (별도 양식 제한 없음)</li></ul>				

	○ /40 4 <sup>Q</sup> I .==	. = 0.0101. /21	2 2인 페이트	_
(2) 프랜차이즈 본사 및 대규모유통업자와의	① '19.1월(또는 개업일)~'22.3월 계약서 ② 계약서에는 임차료율, 수수료율 등 프랜차이즈 본사·대규 모유통업자와 개별 업체 간의 정산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계약서	야 함		함한 전체 문건을 제출해야 완전한 증빙 기	
(3) 매출액 정산 내역 (별도로 정해진 양식 없음)	① '19.1월(또는 개업일)~'22.3월 매출액 정산 내역 ② 매출액 정산 내역에는 총판매금액, 임차료 금액, 카드수수료 금액, 정산금액, 정산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즉, 총액(고객의 최초 결제 대금 총합)과 순액(수수료를 제외한 판매 대금 총합)이 정산 내역에 모두 포함될 필요			
		일반과세자	19~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19~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4)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증빙자료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면세사업자	19~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ноглютг	일반과세자	19~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	19~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sup>\*</sup> 제출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이의신청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

## ② 정부 지침에 따른 사업자 변경

- (개념) 정부 지침에 따라 업종 등을 변경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 로서의 영업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 \* 예) 체육시설법령(문체부 소관) 개정에 따라 일부 체육시설업의 업종 변경을 권고받아 사업자 폐업 처리 후 재등록하여 사업자번호가 바뀐 상황
- 가능한 이의신청 유형
- (보상대상 제외) 모든 유형
- (확인보상 부동의) 매출액 정정
- 추가 제출서류

순번	증빙서류	필수여부	발급처
1	폐업사업자의 폐업사실증명원	필수	
2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법인)	필수	
3	[문체부]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업종* 표시 必)	필수	지자체

<sup>\*</sup> 야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합기도),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등 5개 업종

# 이의신청서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상호명 []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이의 신청인 상호명 법인명 (대표자) []법인사업자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이의신청(다음중 택일): [ ] 손실보상 대상 제외, [ ] 손실보상금 금액, [ ] 손실보상금 감액·미지급, [ ] 손실보상금 환수 상세내용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월 일 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음

## 시설분류확인서

(지역별 시설분류확인서 일련번호 기입(예: 서울종로시설-00001)

# 시설분류확인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이행 대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업체명			
사업장 주소			
시설 유형	※ 시설 유형은 별도로 제 목록'에서 선택하여 기압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 시설

2022.1.1.일부터 3.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의 시설분류를 확인하오니,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 자치단체장 명의 직인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지역별 방역조치 이행 시설확인서 일련번호 기입(예 : 서울종로이행-00001)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이행 대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사업자등록번호	7	개업연월일	
대표자 성명	(-	연락처 휴대전화)	
업체명			
사업장 주소			
시설 유형	※ 시설 유형은 별도로 목록'에서 선택하여	제공되는 '집합금지 및 영 기입	명업제한 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 기간	'22 ~ '22 .(00일), '22 ~ '22 .(00일),	'22 ~ '22 .(00일), '22 ~ '22 .(00일),	'22 ~ '22 .(00일), '22 ~ '22 .(00일),
	(총 00일간)	(총 00일간)	(총 00일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 이행기간	'22 ~ '22 .(00일), '22 ~ '22 .(00일),  (총 00일간)	'22 ~ '22 .(00일), '22 ~ '22 .(00일),  (총 00일간)	'22 ~ '22 .(00일), '22 ~ '22 .(00일), .: (총 00일간)

※ 방역조치 기간 및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해당되는 날짜를 모두 작성

2022.1.1.일부터 3.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하였음을 확인하오니, 「소상공인손실보상」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자치단체장 명의 직인

##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지역별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최종처분 내역 일련번호 기입(예 : 서울종로처분-00001)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이행 대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사업자 <del>등록</del> 번호				개업연	월일		
대표자 성명				연릭 (휴대 <sup>:</sup>	<sup>·</sup> 처 전화)		
업체명							
사업장 주소							
시설 유형	※ 시설 원	유형은 별도로 <sup>X</sup> 선택하여 기입	제공되는 '집합급	글지 및 영	'업제한 조	치 대상 /	시설 목록'
위반행위일	1회('22	2.0.0), 2회('2	2.0.0),				
위반법령							
위반내용	o 1호 o 2호	위반 내용 : 위반 내용 :					
처분(처벌) 내용	벌금 ( )	운영중단 ( )	폐쇄 ( )	과태료 ( )	미확정 ( )	무혐의 ( )	지자체 오분류 ( )
처분일(처벌일)	1호  ('22.00) ('22.0.0) :	1호  ('22.00) ('22.0.0) ('22.0.0) :	1호 ('22.00) ('22.0.0) :	1호 ('22.0.0) ('22.0.0) :	1호 ('22. <u>0</u> .0) ('22.0.0) :	1호 ('22. <u>0</u> .0) ('22.0.0) :	1호  ('22.00) ('22.0.0)
처분(처벌)기간		1회 ( <u>'22.0.0</u> ẽ'22. 0.0)(00일간) :	( <u>'22.0.0</u> 0.0)(00일간) :				

※ 처분(처벌) 내용은 과태료·운영중단·폐쇄·벌금 등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표시

※ 방역조치 위반행위일 및 처분일(처벌일)은 해당되는 날짜를 모두 작성

2022.1.1.일부터 3.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위반한 바, 위와 같이 처분 내지 처벌 되었음을 확인하오니,「소상공인 손실보상」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자치단체장 명의 직인

## 신속보상금 신청·지급 동의 철회 확인서(지자체용)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내 인원제한' 조치 이행 대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		<b>연락처</b>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 일자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지급 일자	
지급된 보상금 총액	금 □억	ᅥ □천□백□십□	]만 □천□백□십원 정
신청·지급 철회 동의			· <b>지급되었으므로 보상금</b> L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신청인에 대해 지자체 신청·접수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상금이 신청·지급된 바,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기 신청된 보상금 신청과 지급 건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를 철회하는 것에 동 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자치단체장 명의 직인